

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와 개정조례(안) 대비표

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구민회관 건물에 대하여 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9. 20.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7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7월 15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6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1999년 9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가. 개정이유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수혜를 주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규정으로서 일부 조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장학금지급 형평성 유지 및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통장자녀 장학생의 장학기준중 특기장학생의 통장경력 1년 이상을 요하는 규정 삭제 (안 제3조제1항)
- 2) 통장자녀 장학생의 정원 제한인 15% 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함(안 제6조)
- 3)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을 때는 구에서 재산변동 상황 파악이 곤란하여 규정 삭제(안 제9조제1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성만)

동 조례(안)은 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사항으로서 제3조제1항의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상을 통장경력 1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규제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제9조제1항2호의 장학금 지급정지사유중 판단에 지장을 주는 모호한 용어를 삭제하고 제6조의 장학생 인원을 통장 전체의 15%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예산 범위 내로 변경하여 신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
----------	----

제출년월일 : 1999. 7. 13.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수혜를 주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규정으로서 일부 조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장학금지급 형평성 유지 및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통장자녀 장학생의 장학기준중 특기 장학생의 통장경력 1년 이상을 요하는 규정삭제(안 제3조제1항)
- 통장자녀 장학생의 정원제한인 15% 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내로 규정 완화(안 제6조)
-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을 때는 구에서 재산변동 상황 파악이 곤란하여 규정 삭제(안 제9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 제3차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정 [기예05090-1589('99.5.28)]
-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생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3조(장학생의 자격)</p> <p>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사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p>제6조(장학생의 정원)</p> <p>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15%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p> <p>제9조(지급정지) 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 	<p>제3조(장학생의 자격)</p> <p>①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p>제6조(장학생의 정원)</p> <p>장학생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p> <p>제9조(지급정지) 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삭 제> 		